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2.12.20>

징 계 처 분 등 사 유 설 명 서		
소 속	직 위(직 급)	성 명
주 문		
이 유	별첨 징계등의결서 사본과 같음	
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처분권자 [인] 귀하		
참고: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		